새 법령 소개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일이 확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까지 확대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여 이를 활성화합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세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4월 1일 시행

● 국세 고액체납자의 입국 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체납처분의 위탁(제30조의2 신설)
세무서장은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 시 수입물품 등에 대해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제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① 세무서장은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등 체납처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시,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기준일이 확대됩니다.

「자동차관리법」 4월 18일 시행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 시점을 조정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함

–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로 적용하도록 함(제31조의2제1항 제1호 개정).



새 법령 소개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 확대합니다.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4월 18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공정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범위를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외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의 계약으로까지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등을 해소하고자 함

(참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내용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등

수목원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여 이를 활성화 합니다.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4월 30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목원 ·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 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4월 시행법령 목록 (2017. 3. 20. 기준)

연변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4378호	기획재정부	4. 1.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1호	기획재정부	4. 1.
3	관세법	법률	제14379호	기획재정부	4. 1.
4	국세징수법	법률	제14383호	기획재정부	4. 1.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609호	기획재정부	4. 1.
6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4호	기획재정부	4. 1.
7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713호	법원행정처	4. 1.
8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기획재정부	4. 1.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8호	기획재정부	4. 1.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35호	기획재정부	4. 1.
1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29호	기획재정부	4. 1.
1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보건복지부	4. 1.
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390호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4. 1.
14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43호	기획재정부	4. 1.
1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24호	해양수산부	4. 9.
16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2호	미래창조과학부	4. 14.
17	농촌진흥법	법률	제14527호	농촌진흥청	4. 18.
18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9호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청	4. 18.
1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4546호	국토교통부	4. 18.
20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29.
21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4707호	국토교통부	4. 22.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462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23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58호	국회사무처	4. 22.
24	내수면어업법	법률	제14727호	해양수산부	4. 22.
2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0호	해양수산부	4. 22.
26	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14652호	농림축산식품부	4. 22.
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3호	국토교통부	4. 22.
2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681호	중소기업청	4. 22.
29	변리사법	법률	제14688호	특허청	4. 22.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716호	국토교통부	4. 22.
31	연안관리법	법률	제14740호	해양수산부	4. 22.
32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4741호	해양수산부	4. 22.
3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2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4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5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6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8호	문화체육관광부	4. 22.
3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5호	해양수산부	4. 22.
3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725호	국토교통부	4. 22.
3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4. 29.
40	수목원 ·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2호	산림청	4. 30.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